|  |  |  |
| --- | --- | --- |
| **출입국 검사검역 신고규정**  1999년 12월 17일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  **제1장 총 칙**  **제1조** 출입국 검사검역 신고관리를 보강하고 검사신고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등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 검사검역 신청, 신고 수속을 밟는 행위는 모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검사 신고범위  (1) 국가 법률, 법규에서 반드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가 검사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2) 수입국가 또는 지역에서 반드시 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증서가 있어야 입국을 허용한다고 규정한 경우  (3) 관련 국제조약에서 반드시 검사검역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4) 원산지증명서 및 일반 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 검사 신고인은 검사신고를 할 때 소정 서식의 검사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입국검사검역과 관련되는 증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규정에 따라 검사검역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5조** 검사신고서의 작성요구는 아래와 같다.  (1) 검사 신고인은 요구에 따라 검사신고서에 열거한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작성 시 글을 깔끔하게 쓰고 필적이 분명해야 하며 제멋대로 수정해서는 아니된다. 검사 신고일자는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신고를 수리한 일자에 따라 기입한다.  (2) 검사신고서에는 반드시 검사신고 회사의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2장 검사신고 자격**  **제6조** 검사신고 회사가 처음 검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회사 영업집조와 정부 비준문건을 지참하고 등록 비안 수속을 밟고 검사신고 회사의 코드를 취득해야 한다. 그 검사신고요원은 검사검역기구의 훈련에 합격된 후 "검사신고원증"을 수령하고 그에 의거하여 검사신고를 할 수 있다.  **제7조** 검사신고 대행회사는 반드시 등록등기 수속을 마쳐야 하며, 그 검사신고요원은 검사검역기구의 훈련에 합격된 후 "대리 검사신고원증"을 수령하고 그에 의거하여 검사신고 대행 수속을 할 수 있다.  **제8조** 검사신고 수속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검역기구에 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탁서는 위탁인이 검사검역기구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 비 무역성격의 검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신고인이 유효 증서를 지참하고 직접 검사신고 수속을 할 수 있다.  **제3장 입국 검사신고**  **제10조** 입국 검사신고를 할 때에는 입국화물 검사신고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계약서, 인보이스, 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아래의 상황에서 검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이외에 요구에 따라 관련 문건도 제출해야 한다.  (1) 안전품질 허가, 위생등록, 또는 기타 비준, 허가가 필요한 화물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품질검사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외 품질증서나 품질보증서, 제품사용설명서 및 관련 표준과 기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샘플거래에 속하는 경우에는 거래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품질 등급이나 물량 계산단위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중량감정을 신청해야 한다.  (3) 입국화물의 검사신고를 할 때에는 국가환경보호부서가 발급한 《폐기물 수입 비준증서》와 인가를 거친 검사기구가 발급한 선적 전 검사합격증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4) 파손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손검사서, 철도 업무기록, 항공운송사고기록 또는 해사사고 등의 화물파손상황을 증명하는 관련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중(물)량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량명세서, 검사화물리스트 등을 제출해야 한다.  (6) 화물 접수, 사용부문이 검수를 했거나 기타 기관에서 검측을 한 경우에는 검수보고서나 검측결과, 그리고 중량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7) 입국하는 국제여행자는 입국검역 천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8) 입국하는 동식물 및 그 제품은 무역계약,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외에 수출국가나 지역 정부당국의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검역 심사허가 수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입국 동식물 검역허가증도 제출해야 한다.  (9) 국경통과 동식물 및 그 제품의 검사를 신고 시에는 화물 선적명세서와 수출국가 또는 정부당국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물을 운송하여 국경을 통과 시에는 국가검사검역국이 발급한 동식물 국경통과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10) 입국 운송수단, 컨테이너 검사를 신고 시에는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외에 관련 인원의 건강상태도 신고해야 한다.  (11) 입국 여객, 교통인원의 반려동물의 입국은 입국동물 검역증명서 및 예방 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2) 과학연구 등의 특수한 수요로 인해 입국 금지 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검사검역국이 발급한 특별허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3) 특수물품을 수입 시에는 관련 허가서류 또는 규정한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출국 검사신고**  **제12조** 출국 검사신고 시에는 출국화물 검사신고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대외무역계약(화물 매출확인 또는 편지전보), 신용장, 인보이스, 선적명세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아래의 상황에서 검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이외에 요구에 따라 관련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1) 품질허가, 위생등록을 실시하거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 화물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수출화물은 생산자 또는 경영자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하며, 아울러 검사합격 또는 검측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중량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량명세서 또는 중량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샘플에 따른 거래화물은 매매 쌍방이 확인한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4) 출국인원은 검사검역기구에 국제여행 건강증명서 및 국제 예방접종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5) 출국 운송수단, 컨테이너의 검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관련 인원의 건강상태도 신고해야 한다.  (6) 수출 위험화물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검사검역기구에 포장용기 성능 감정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 위험화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검사검역기구에 위험화물 포장용기 사용감정을 신청해야 한다.  (7) 수출 위험화물 검사신고를 할 때 반드시 위험화물 포장용기 성능 감정서와 사용 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8) 원산지증명서와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9) 특수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심사허가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5장 검사신고 및 증서의 변경**  **제14조** 검사신고인이 검사신고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원인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야 취소 수속을 할 수 있다.  **제15조** 검사신고를 한 30일 내에 검사검역 사항에 대해 연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신고가 자동 취소된 것으로 처리한다.  **제16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1) 검사검역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수입 국가나 지역을 변경하고 또한 부동한 검사검역 요구가 있는 경우  (3) 포장을 바꾸거나 다시 병합 포장을 하는 경우  (4) 이미 검사신고를 취소한 경우.  **제17조** 검사신고인은 증서 변경을 신청할 때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편지와 전보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아울러 원 증서를 반납하여 심사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수속을 할 수 있다.  품목, 수(중)량, 검사검역결과, 포장, 출하인, 수하인 등 중요한 항목을 변경한 후 계약, 신용장 등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정 후 수출,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두 변경을 할 수 없다.  **제6장 검사신고 기한 및 장소**  **제18조** 입국화물은 입국 전 또는 입국 시에 입국출입항, 지정 또는 도착역의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신고 수속을 밟아야 하며, 입국 운송수단 및 인원은 입국 전 또는 입국 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제19조** 입국화물의 대외 클레임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클레임 유효기간 전의 최저 20일 내에 화물도착 출입항 또는 화물도착지의 검사검역기구에 검사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미생물, 인체조직, 바이오제품, 혈액 및 그 제품 또는 종축, 종금 및 그 정액, 태아, 수정란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 30일 전에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제21조** 기타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 15일 전에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제22조**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 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 7일 전에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제23조** 수출화물은 늦어도 통관신고 또는 선적 7일 전에 검사신고를 해야 하며, 검사검역 주기가 비교적 긴 특수한 화물은 상응하는 검사검역 시간을 두어야 한다.  **제24조** 출국 운송수단과 인원은 출국 전에 출입항 검사검역기구에 검사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제25조** 격리 검역이 필요한 출국동물은 출국 60일 전에 예보를 하고 격리 7일 전에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제26조** 검사신고인이 검사검역증서에 특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신고서에 이를 밝히고 관련 문건을 첨부해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27조** 검사신고회사 또는 검사신고인이 검사검역기구의 증서, 인감을 위조, 매매, 변조, 개찬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사법감정업무,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또는 기타 위탁 검사 및 감정 업무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9조** 이 규정은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0조**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에 국가상검국이 반포한 《수출입상품 검사신고 규정》과 원 국가위생검역국이 반포한 《출입국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신고 제도 실시와 관련한 통지》는 동일자로 폐지된다. |  | **出入境检验检疫报检规定**  1999年12月17日  国家出入境检验检疫局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出入境检验检疫报检管理，规范报检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及其实施细则、《中华人民共和国食品卫生法》等法律法规的有关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根据法律法规规定办理出入境检验检疫报检／申报的行为均适用本规定。  **第三条** 报检范围  　　（一）国家法律法规规定必须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以下简称检验检疫机构）检验检疫的；  　　（二）输入国家或地区规定必须凭检验检疫机构出具的证书方准入境的；  　　（三）有关国际条约规定须经检验检疫的；  　　（四）申请签发原产地证明书及普惠制原产地证明书的。  **第四条** 报检人在报检时应填写规定格式的报检单，提供与出入境检验检疫有关的单证资料，按规定交纳检验检疫费。  **第五条** 报检单填制要求为：  　　（一）报检人须按要求填写报检单所列内容；书写工整、字迹清晰，不得涂改；报检日期按检验检疫机构受理报检日期填写。  　　（二）报检单必须加盖报检单位印章。  **第二章 报检资格**  **第六条** 报检单位首次报检时须持本单位营业执照和政府批文办理登记备案手续，取得报检单位代码。其报检人员经检验检疫机构培训合格后领取“报检员证”，凭证报检。  **第七条** 代理报检单位须按规定办理注册登记手续，其报检人员经检验检疫机构培训合格后领取“代理报检员证”，凭证办理代理报检手续。  **第八条** 代理报检的，须向检验检疫机构提供委托书，委托书由委托人按检验检疫机构规定的格式填写。  **第九条** 非贸易性质的报检行为，报检人凭有效证件可直接办理报检手续。  **第三章 入境报检**  **第十条** 入境报检时，应填写入境货物报检单并提供合同、发票、提单等有关单证。  **第十一条** 下列情况报检时除按第十条规定办理外，还应按要求提供有关文件。  　　（一）凡实施安全质量许可、卫生注册、或其他需审批审核的货物，应提供有关证明。  　　（二）品质检验的还应提供国外品质证书或质量保证书、产品使用说明书及有关标准和技术资料；凭样成交的，须加附成交样品；以品级或公量计价结算的，应同时申请重量鉴定。  　　（三）报检入境废物时，还应提供国家环保部门签发的《进口废物批准证书》和经认可的检验机构签发的装运前检验合格证书等。  　　（四）申请残损鉴定的还应提供理货残损单、铁路商务记录、空运事故记录或海事报告等证明货损情况的有关单证。  　　（五）申请重（数）量鉴定的还应提供重量明细单，理货清单等。  　　（六）货物经收、用货部门验收或其他单位检测的，应随附验收报告或检测结果以及重量明细单等。  　　（七）入境的国际旅行者，应填写入境检疫申明卡。  　　（八）入境的动植物及其产品，在提供贸易合同、发票、产地证书的同时，还必须提供输出国家或地区官方的检疫证书；需办理入境检疫审批手续的，还应提供入境动植物检疫许可证。  　　（九）过境动植物及其产品报检时，应持货运单和输出国家或地区官方出具的检疫证书；运输动物过境时，还应提交国家检验检疫局签发的动植物过境许可证。  　　（十）报检入境运输工具、集装箱时，应提供检疫证明，并申报有关人员健康状况。  　　（十一）入境旅客、交通员工携带伴侣动物的，应提供入境动物检疫证书及预防接种证明。  　　（十二）因科研等特殊需要，输入禁止入境物的，必须提供国家检验检疫局签发的特许审批证明。  　　（十三）入境特殊物品的，应提供有关的批件或规定的文件。  **第四章 出境报检**  **第十二条** 出境报检时，应填写出境货物报检单并提供对外贸易合同（售货确认书或函电）、信用证、发票、装箱单等必要的单证。  **第十三条** 下列情况报检时除按第十二条规定办理外，还应按要求提供有关文件。  　　（一）凡实施质量许可、卫生注册或需经审批的货物，应提供有关证明。  　　（二）出境货物须经生产者或经营者检验合格并加附检验合格证或检测报告；申请重量鉴定的，应加附重量明细单或磅码单。  　　（三）凭样成交的货物，应提供经买卖双方确认的样品。  　　（四）出境人员应向检验检疫机构申请办理国际旅行健康证明书及国际预防接种证书。  　　（五）报检出境运输工具、集装箱时，还应提供检疫证明，并申报有关人员健康状况。  　　（六）生产出境危险货物包装容器的企业，必须向检验检疫机构申请包装容器的性能鉴定。  　　生产出境危险货物的企业，必须向检验检疫机构申请危险货物包装容器的使用鉴定。  　　（七）报检出境危险货物时，必须提供危险货物包装容器性能鉴定结果单和使用鉴定结果单。  　　（八）申请原产地证明书和普惠制原产地证明书的，应提供商业发票等资料。  　　（九）出境特殊物品的，根据法律法规规定应提供有关的审批文件。  **第五章 报检及证单的更改**  **第十四条** 报检人申请撤销报检时，应书面说明原因，经批准后方可办理撤销手续。  **第十五条** 报检后３０天内未联系检验检疫事宜的，作自动撤销报检处理。  **第十六条** 有下列情况之一的应重新报检：  　　（一）超过检验检疫有效期限的；  　　（二）变更输入国家或地区，并又有不同检验检疫要求的；  　　（三）改换包装或重新拼装的；  　　（四）已撤销报检的。  **第十七条** 报检人申请更改证单时，应填写更改申请单，交附有关函电等证明单据，并交还原证单，经审核同意后方可办理更改手续。  　　品名、数（重）量、检验检疫结果、包装、发货人、收货人等重要项目更改后与合同、信用证不符的，或者更改后与输出、输入国家或地区法律法规规定不符的，均不能更改。  **第六章 报检时限和地点**  **第十八条** 对入境货物，应在入境前或入境时向入境口岸、指定的或到达站的检验检疫机构办理报检手续；入境的运输工具及人员应在入境前或入境时申报。  **第十九条** 入境货物需对外索赔出证的，应在索赔有效期前不少于２０天内向到货口岸或货物到达地的检验检疫机构报检。  **第二十条** 输入微生物、人体组织、生物制品、血液及其制品或种畜、禽及其精液、胚胎、受精卵的，应当在入境前３０天报检。  **第二十一条** 输入其他动物的，应当在入境前１５天报检。  **第二十二条** 输入植物、种子、种苗及其他繁殖材料的，应当在入境前７天报检。  **第二十三条** 出境货物最迟应于报关或装运前７天报检，对于个别检验检疫周期较长的货物，应留有相应的检验检疫时间。  **第二十四条** 出境的运输工具和人员应在出境前向口岸检验检疫机构报检或申报。  **第二十五条** 需隔离检疫的出境动物在出境前６０天预报，隔离前７天报检。  **第二十六条** 报检人对检验检疫证单有特殊要求的，应在报检单上注明并交附相关文件。  **第七章 附 则**  **第二十七条** 报检单位和报检人伪造、买卖、变造、涂改、盗用检验检疫机构的证单、印章的，按有关法律法规予以处罚。  **第二十八条** 司法鉴定业务、行政机关委托及其它委托检验和鉴定业务，参照本规定执行。  **第二十九条** 本规定由国家出入境检验检疫局负责解释。  **第三十条** 本规定自２０００年１月１日起施行，原国家商检局发布的《进出口商品报验规定》和原国家卫生检疫局发布的《关于对入、出境集装箱、货物实行报检制度的通知》同时废止。 |